

1. 의결주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제9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 기준을 상향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 4.18. 공포, 2024.10.19. 시행)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업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분의 10에서 20으로 상향(안 제37조제3항 개정)

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개정)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사무 처리 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10 이내”를 “20 이내”로 한다.

제38조의2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등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